

전주지방법원 2020. 12. 16 선고 2019가단2799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

담당변호사 최의석

변론 종결 2020. 11. 25

판결 선고 2020. 12. 16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9. 7. 27. 접수 제402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

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.

나.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없다(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57904판결 참조)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9. 10. 14. 전주지방법원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고,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20. 7. 10.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,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.

2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임성실

별지